

지정금융기관 선정에 관한 내규 제정안

1. 제안이유

가. 지방공기업 재정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재정 확충을 도모할 목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참고 기준안을 바탕으로 지정금융기관 선정 기준에 대한 내규를 제정하고자 함

1)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 (1) 지방공기업 등 금고 지정 금고 보완 및 세부 선정 기준 마련
- (2) 금고 평가기준 상 협력사업비 비중 최소화

2) 행정안전부 「지방공공기관 금고 지정 참고 기준안」

2. 주요내용

가. 총칙

1) 주요 용어에 대한 정의

- (1) 금융기관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3조(현금출납사무 취급 금융회사의 지정) 준용
- (2) 지정금융기관 :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용되는 “금고”를 회계규정의 용어와 일치
- (3) 지정금융기관 약정 및 협력사업비 : 행정안전부 참고 기준안 적용

2) 지정금융기관에 대한 일반사항

- (1) 지정금융기관의 수 : 1개
- (2) 약정기간 : 4년(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 나누지 아니함)

나. 지정금융기관의 선정

1) 지정금융기관 선정 방법

- (1) 경쟁방법 : 2개 이상의 금융기관
- (2) 수의방법 : 인천광역시 내 1개 금융기관 또는 경쟁방법에도 1개의 금융기관 참여, 재공고에도 추가적인 참여기관 없을 경우

2) 지정금융기관 선정에 관한 입찰공고

- (1) 공고기한 : 기존 지정금융기관 약정 만료일 3개월 전
- (2) 공고기간 : 최소 20일 ~ 최대 40일

3) 금융기관의 입찰 참여

4) 지정금융기관의 선정 등

- (1) 선정방법 : 지정금융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평가 결과로 선정
- (2) 공지방법 :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 홈페이지 등에 공지

5) 지정금융기관 약정 체결 등

- (1) 약정기한 : 선정 서면 통지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10일 연장 가능)
- (2) 약정에 포함되는 필수사항
- (3) 약정기한까지 지정금융기관 약정 미체결 시 한시적 조치사항
- (4) 기존 지정금융기관과의 인수인계 사항

6) 지정금융기관의 포기

7) 지정금융기관 약정의 해지

다. 지정금융기관 선정심의위원회

1)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2) 심의위원회 구성 등

- (1) 구 성 : 위원장(사장) 포함 6명 ~ 9명, 외부위원 과반수 구성
- (2) 정 족 수 : 재적위원 2/3 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3) 위촉 제외대상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방법

5) 평가결과의 공개

6) 수당과 여비

라. 지정금융기관의 관리 및 감독

1) 출납사항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에 대한 정리 및 보관

2) 지정금융기관의 감독 및 검사

3) 협력사업비

(1) 협력사업비의 예산 편성

(2) 협력사업비 총액의 공개

(3) 협력사업비의 사용 및 배분 등에 관한 사항

(4) 협력사업비의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공개

3. 참고사항

가. 관계규정 : 회계규정 제70조 제2항

나. 예산조치 : 심의위원회 수당 및 여비, 협력사업비 등

(해당 사업연도 본예산에 반영 예정)

다. 합 의

1) 협력사업비의 기준(별표 1. 공사 사회공헌 사업 현황), 해당부서의 공식 의견을 수렴함

2) 협력사업비의 사용 및 배분 등에 관한 사항, 경영관리처와 합의되었음

라. 기 타

1) 입안예고(2026. 7. 7. ~ 7. 13.) 결과 : 의견 없음

2) 홈페이지 사전 게시(2026. 7. 7. ~ 7. 26.) 결과 : 의견 없음

지정금융기관 선정에 관한 내규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도시공사 사장 류 윤 기

2026년 9월 3일

내규 제687호

지정금융기관 선정에 관한 내규 제정안

지정금융기관 선정에 관한 내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인천도시공사가 회계규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지정금융기관의 선정 등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기관”이란 제2호의 업무를 취급하는 주체로 아래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 가. 「은행법」 제8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
 - 나.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 바.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 사.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새마을금고
 - 아.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 자.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으로 한정)
 - 차.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으로 한정)
 - 카.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으로 한정)

다.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2. “지정금융기관”이란 인천도시공사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이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수입금의 수납, 비용 지급, 전산시스템 연계 등의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려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3. “제안서”란 지정금융기관 선정에 관한 입찰에 참가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이 인천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제출하는 일체의 서류를 말한다.
4. “경쟁방법”이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평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평가하여 지정금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5. “수의방법”이란 경쟁방식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지정금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적격 금융기관”이란 제안서 평가 점수 합계가 70점 이상인 금융기관으로, 지정금융기관 약정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금융기관을 말한다.
7. “지정금융기관 약정”이란 사장과 지정금융기관으로 선정된 적격 금융기관의 장이 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8. “협력사업비”란 지정금융기관 약정에 따라 지정금융기관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용도 지정 없이 공사에 출연하는 현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지정금융기관 선정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령, 조례, 사규 중에 특별히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내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정금융기관) ① 지정금융기관의 수는 1개로 한다.

② 지정금융기관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한다.

③ 지정금융기관의 약정기간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회계연도를 나누지 아니한다.

제2장 지정금융기관의 선정

제5조(지정금융기관 선정 방법) ① 공사는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경쟁방법에 따라 지정금융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방법에 따라 지정금융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1. 인천광역시 내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
2. 경쟁방법에 따라 경쟁을 실시하였으나 1개의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에도 추가적인 참여기관이 없는 경우

제6조(지정금융기관 선정에 관한 입찰 공고) ① 공사는 지정금융기관 선정 방법을 결정한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 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평가 기준 등을 공사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② 공사는 경쟁방법으로 지정금융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 기존에 운영 중인 지정금융기관과의 약정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제1항의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공고 기간은 금융기관의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최소 20일에서 최대 40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고 기간을 최소 10일까지 단축할 수 있다.

1. 기존에 운영 중인 지정금융기관 약정의 해지, 이에 준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적격 금융기관이 없어 재공고 또는 새로운 공고를 해야 하는 경우
3. 적격 금융기관에 해당하는 모든 금융기관이 자격을 포기함에 따라 재공고 또는 새로운 공고를 해야 하는 경우

제7조(금융기관의 입찰 참여) ① 지정금융기관 선정에 관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금융기관은 공사의 자금 운용 효율성 및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으로 한다.

② 지정금융기관 선정에 관한 입찰에 참여 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은 공고 기간 내에 제안서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제안서의 심사 및 평가) 사장은 경쟁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정금융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 및 평가한다.

제9조(지정금융기관의 선정 등) ① 사장은 제8조의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금융기관을 선정해야 한다.

② 공사는 전항의 지정금융기관을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사 홈페이지 등에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 등을 공고하고, 선정된 해당 금융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금융기관 약정 체결 등) ① 지정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서면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사와 지정금융기관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약정체결 기한은 당사자 협의에 따라 10일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 지정금융기관 약정에는 취급 업무, 지정금융기관 예치 자금의 범위,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 의무, 현금 출납의 송금 및 이체, 배상 및 변상 책임, 비용 부담 및 수수료, 약정의 해지, 약정서의 조문 해석, 지정금융기관 변경 시 이행사항,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사장은 기존에 운영 중인 지정금융기관과의 약정기간 만료일까지 새로운 지정금융기관 약정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지정금융기관 약정체결을 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기존에 운영 중인 지정금융기관이 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기존에 운영 중인 지정금융기관은 새롭게 선정된 지정금융기관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계인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1조(지정금융기관의 포기) ① 사장은 지정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이 스스로 자신의 자격을 포기하거나 그 밖의 지정금융기관 약정을 체결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차순위 적격 금융기관을 지정금융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공사는 적격 금융기관이 없거나 지정금융기관으로 선정된 모든 금융기관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자격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지정금융기관 선정에 관한 재공고 또는 새로운 공고를 할 수 있다.

제12조(지정금융기관 약정의 해지) ① 사장은 국내외 금융시장의 혼란 또는 위기상황이라 판단하여 현재의 지정금융기관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지정금융기관 약정서상의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지정금융기관 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공사는 지정금융기관 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해지 통지 전 해당 지정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지정금융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제13조(심의위원회 심의사항)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제2항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지정금융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 그 결정

에 관한 사항

2. 금융기관 제출 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정금융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 결과 공개 범위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지정금융기관 선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사장 또는 사장이 지정하는 내부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외부위원과 내부위원으로 구분하여 위촉·임명하되, 외부위원의 수가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외부위원 :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공무원 경력자, 지방공사 경력자 등 관련분야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내부위원 : 부서의 장 이상 보직자 또는 전문자격 소지자 중 사장이 지정하는 자

④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내부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정금융기관 선정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지정금융기관 선정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

⑦ 위원의 임기는 임명되거나 위촉된 때부터 지정금융기관 약정 체결일까지로 한다.

⑧ 심의위원회 외부위원의 위촉은 위촉장 수여 등 별도의 절차가 없으며, 지정금융기관 약정 체결과 동시에 자동 해촉된다.

제15조(위촉 제외대상) 공사는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위촉에서 제외한다.

1.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자
2. 평가대상 금융기관이 지정금융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이해당사자가 되는 자
3. 최근 3년 이내에 평가대상 금융기관에 재직한 자
4. 그 밖의 공정한 심의·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제16조(제안서 평가항목 및 방법) ① 심의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심의·평가한다.

1. 금융기관의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
2. 공사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3. 지역주민 이용 편의성
4. 지정금융기관 업무 관리 능력
5. 지역사회 공헌
6. 그 밖의 공사가 정하는 항목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금융기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제안서의 평가에 있어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의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된 기한까지 보완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심의·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하고 평가한다.

④ 공사는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하여 위원들에게 제안서를 심의위원회 개최 이전에 미리 교부 할 수 있다.

⑤ 공사는 제안서를 제출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발표하게 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평가표를 작성하고 심의위원회가 폐회하기 전까지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심의위원회는 제안서 심의·평가 시 각 항목별 평가 결과가 다른 항목의 평가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⑧ 제안서 평가는 공사에서 1차 평가하여 산정한 정량평가와 심의위원이 2차 평가하여 산정한 정성평가를 합산한 점수가 70점 이상인 금융기관을 적격 금융기관으로 정하고, 적격 금융기관 중에서 최고 평가점수를 획득한 금융기관을 지정금융기관으로 선정한다.

⑨ 제5조제2항에 따라 수의방법으로 지정금융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적격 여부를 평가한다.

제17조(평가결과의 공개) 사장은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지정금융기관 선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하여야 한다. 그 밖의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의 범위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8조(회의록) ① 간사 및 서기는 심의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심의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
2. 참석자 및 배석자 명단
3. 평가 대상 및 평가 결과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수당과 여비) ①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는 정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이 외부위원인 때에는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하되, 이 경우 자기소관 사무는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기관의 사무까지 포함한다.

제4장 지정금융기관의 관리 및 감독

제20조(정리 및 보관) ① 지정금융기관은 공사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출납 및 수납 사항을 정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지정금융기관은 매일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익일까지, 매월의 수입과 지출 내역을 익월 5일까지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지정금융기관은 출납사항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사업연도 경과 후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1조(지정금융기관의 감독 및 검사) 지정금융기관의 업무에 관한 감독은 자금업무 부서의 장이 총괄하며, 그 결과를 사장에게 보고한다.

제22조(협력사업비) ① 사장은 지정금융기관 약정에 따라 현금으로 출연 받은 협력사업비를 공사의 예산에 편성한 후 이를 공개해야 한다.

② 자금부서의 장은 협력사업비로 출연 받은 현금 총액을 지정금융기관 약정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③ 사회공헌부서의 장은 별표 1을 기준으로 협력사업비의 사용,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자금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 ④ 자금부서의 장은 협력사업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각 내역을 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5장 보칙

제23조(비밀유지) 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지정금융기관 선정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공사의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심의위원회 위원은 비밀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기타사항) 이 내규에서 정하지 아니한 지정금융기관 선정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지정금융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 당시 이미 약정을 체결하여 지정되어 있는 금융기관은 이 내규에 의하여 선정된 지정금융기관으로 본다.

[별표 1]

공사 사회공헌 사업 현황(제22조 제3항 관련)

구 분	사 업 명		추진시기	사업내용
상생 협력 강화 iHUG				지역동반성장 상생협력 강화
	1	생동감 마을 조성사업	1월~11월	원도심 경관개선사업, 공모 대상지 선정
	2	행복찾음 문화행사	1월~10월	5회 공연, 찾아가는 콘서트, 공동모금회+소리창조
	3	사랑의 합동결혼식	4월~5월	지역저소득, 장애인, 다문화, 세터민 등 결혼식 지원
	4	장애인 체험활동 지원	5월, 9월	시각 및 재가 장애인 야외문화 체험
	5	환경지킴이	5월, 10월	플로깅, 모내기, 버배기 인천시민과 친환경활동
	6	북한 이탈주민 지원	6월~10월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경제적, 정서적 지원
	7	다문화가정 지원	6월~10월	한국사회 정착을 위한 경제적, 정서적 지원
	8	전통시장 활성화	1월~7월	매월 전통시장 물품구입 및 독거노인 등 물품전달
지역 사회 공헌 iHUG				나눔·공헌문화 확산
	9	명절맞이 나눔	1월, 9월	설, 추석 명절 지역사회 물품 나눔
	10	무료급식소 지원	3월, 7월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무료급식 지원
	11	화재안전사고피해자 지원	6월	관내 화재사고 피해자 지원
	12	행복나눔행사	7~8월	임대입주민 생필품 나눔
	13	김장한마당	10월~11월	노사 및 지역사회 화합 김장 나눔
	14	사랑의 연탄 나눔	11월	취약계층 연탄 지원
	15	긴급구호 금품 지원	1월~12월	긴급재난 구호 및 취약계층 지원
아동 성장 강화 iHUG				아동의 성장·자립 강화
	16	꿈의책방	1월~8월	책방조성 및 물품지원
	17	장학사업	2월, 6월	취약계층 아동 40명 지원 1
	18	iHUG I Am Me	1월~12월	한부모가정 교육격차 해소, 온라인 영어교육,
	19	디딤씨앗통장	8월	정부와 1:1 후원금 매칭 보호시설 아동
	20	백혈병소아암아동 지원	11월	백혈병 소아암 지원
	21	두드림(Do Dream)	1월~12월	보호시설 퇴소, 예정 청소년 기술 교육비 지원
	22	성장 디딤돌	1월~12월	가정폭력, 복지시설 퇴소 청소년 자립 지원
	23	아이리더	1월~12월	취약계층 영재아동 지원
주거 복지				입주민의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삶 추구
	24	시니어 돌봄	2월~12월	가사돌봄 및 주거서비스 상담, 안심전화 등
	25	AI 돌봄	1월~12월	AI 스피커를 활용한 스마트 돌봄
	26	건강음료 안심돌봄	3월~12월	음료 정기배달을 통한 고립가구 발굴
	27	나눔 냉장고	3월~12월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식품꾸러미 지원
	28	생명사랑아파트	1월~12월	찾아가는 심리상담소 운영
	29	위기가정 긴급지원	1월~12월	생계, 의료 등 위기가구 지원사업
				입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30	찾아가는 나눔세탁	1월~12월	독거가구 이불세탁 방문서비스
	31	노후주택 리모델링	3월~11월	노후 공실 전용부 리모델링
	32	도배교체	3월~11월	장기거주세대 노후도배 교체

구 분	사 업 명		추진시기	사업내용
	33	재난안전교육	3월~10월	입주민 대상 재난안전교육 및 응급처치교육
	34	주거안심케어	3월~12월	지역주민 활동가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35	자립준비청년 주거지원	4월~12월	보호종료 5년 이내 자립준비청년 주택지원
				함께 성장하는 지역공동체 구축
	36	반찬나눔	3월~12월	가족봉사단 반찬 나눔, 중장년 요리교육, 반찬 바우처
	37	공동생활협의체	3월~12월	올바른 주거문화 정착·공동문제 대응 협의체 구성·운영
	38	주민문화행사	3월~11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여가문화생활 지원
	39	가가호호	3월~12월	세대별 방문을 통한 고립가구 조기 발굴
	40	AI 및 디지털교육	4월~8월	키오스크, 챗GPT, 비대면진료앱 등 디지털 활용정보 교육
	41	청년 자립역량 강화교육	4월~10월	청년 기초역량 및 사회적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42	희망의 집수리 사업	1월~12월	노후주택 거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 추진
	43	iH형 고령친화 맞춤형 집수리 사업	1월~12월	관내 노령자 맞춤형 집수리 수행
도시 재생				원도심 정주환경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44	인천 도시재생 예비사업	5월~12월	원도심 소규모 노후 환경 개선사업
	45	공동이용시설 활성화 지원사업	5월~12월	도시재생사업 종료지역 내 공동이용시설 사후관리 지원
	46	원도심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5월~12월	지역상권 활성화 및 부·처 연계사업 선정 지원
	47	도시재생기업 지원사업	5월~12월	마을관리협동조합 브랜딩 및 마케팅 고도화 지원
기타				지역동반성장 상생협력 강화
	48	1사 1하천 가꾸기 운동	4월, 9월	장수천 정화활동
	49	i-Heritage Class 운영	7~10월	지역주민 대상 문화유산 교육프로그램 운영